

# 산업안전보건, 전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전환 필요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 근로자 중심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위해 최선 산안법,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호하도록 개정 추진

취재 정대영 기자 anjty@safety.or.kr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환경노동 전문가로 꼽힌다. 이는 그의 지난 활동들을 들여다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신 위원장은 1980년대부터 10여 년간 산업현장을 직접 누비며 노동·인권 운동에 앞장서 왔다. 이후 그는 1992년 14대 국회에서 입성한 후 환경노동위원회에 몸을 담으면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또 16대 국회에서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 나갔다. 당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 재임시절에 노동계와 재계의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주5일 근무제를 도입시킨 것이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대 국회에서는 그동안의 환경노동 관련 경험을 인정받아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 이처럼 그는 환경노동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신 위원장의 의정활동에는 많은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다. 이에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우리나라 산업안전문화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다.

### Q.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해 남다른 신념과 철학을 지니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 철저히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 평소 제 신념입니다. 근로자는 사람이기에 실수를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그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산업 현장에는 여러 안전기술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을 헛디디는 걸 예상하고 난간을 설치한다든가, 건강이 위독해질 것을 예상해 인체에 덜 해로운 재료를 쓰는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우리 산업현장에서는 아직도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중심의 안전보건체계가 갖춰지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작업장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로자가 관리자 눈치를 보는 구조가 지속되는 한 근로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은 계속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권리를 인정하고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문제가 전반적인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Q. 환노위를 이끌어 감에 있어 역점을 두고 계신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점 현안으로는 '비정규직 차별 문제 해소'를 들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 노동계 내에서의 약자층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고, 불공평한 근로조건이 확대되는 등 현 노동환경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번 국회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반드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돼야 하는데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등 편법적인 운영 사례는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규직과의 차별을 없애거나 줄이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계와 노동계 양측 모두 편견 없이 만날 것입니다.

더불어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저를 비롯해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지 않고, 재계와 노동계 양측을 잘 존중하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당한 결론을 이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Q.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가 유독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만 발전이 더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1,436만 2,372명 가운데 9만 3,292명이 산업재해를 당했습니다. 이 가운데 2,114명은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로자 1만 명당 사고로 사망한 비율은 0.9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미국(0.35명)의 2.7배, 일본(0.20명)의 4.8배, 독일(0.16명)의 6배에 이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산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청이 사내하청 근로자의 작업환경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산재발생의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 기업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겨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 역시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980년대 굴뚝산업을 기반으로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비스업종의 증가, 하청 근로자의 증가 등 변화된 산업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법제도가 마련돼야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Q. 산업재해의 입증 책임을 근로자와 사업주, 국가 중 누구에게 둘 것이냐 하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업무상 질병의 입증 책임을 피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와 국가가 증명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 법령을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현행 제도가 피해 근로자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성 및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인과관계의 증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재계는 이와는 상반된 의견을 내보였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 근거가 되는 사실에 대해 입증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입증책임의 일반원리'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지요. 고용노동부 또한 인권위의 권고안이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면 일단 산재로 전제된 뒤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면 정부와 사업주가 나서서 반증하라는 것이어서 다소 무리한 주장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현안이 된 삼성반도체 근로자들의 백혈병 피해사례에서 보듯이 산재보험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이 부각돼야 합니다. 따라서 노사의 의견조율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기본적인 입증책임 주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 Q. 장시간 근로문제 역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화두입니다. 이와 관련해 위원장님께서도 그간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의 추진 계획에 대해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가장 길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당 52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근로자가 5명 중 1명꼴이며, 우리 근로자의 연 평균 노동시간은 무려 2,193시간에 달합니다.

장시간 노동관행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없다면 우리 근로자들의 삶의 질은 향후 더욱 나빠질 것입니다. 실로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가 됐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장시간 노동 체제는 경쟁력 향상에도 짐이 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비정규직을 포함한 저임금 근로자들의 경우 산업, 특근이 줄어들게 되면 곧바로 생계에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 등을 포함해 저임금 계층의 실질 임금이 향상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